

동 지침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(6판)(“20.10.12 시행)을 수정 · 보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 가이드 라인으로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---

##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[7판]

---

**2020. 11. 11.**



**보건복지부**

# 목 차

I. 개 요 .....	1
1. 목 적 .....	1
2. 기본방향 .....	2
II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조치사항 .....	2
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.....	2
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.....	3
3. 시설 입소·출입 시 관리 강화 .....	4
4. 접촉의 최소화 .....	6
5. 시설 휴관(원) 시 조치사항 .....	6
6.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.....	6
7. 행정사항 .....	7
III.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세부 가이드라인 .....	8
IV. 지자체 협조사항 .....	12
V.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적용 .....	13

## ▷ 불 임 ◁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행동수칙 .....	14
2. 감염병 예방수칙 .....	16
3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수칙 포스터 .....	17
4.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.....	18
5.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 .....	19
6. 사회복지시설 소독안내(요약) .....	21
7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신고 대상 .....	23
8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정보 .....	24

## ▷ 서 식 ◁

1. (서식1-1) 시설 입소자(종사자) 모니터링(임상증상기록지) .....	25
2. (서식1-2) 시설 종사자 모니터링(임상증상기록지) .....	26
3. (서식2) 접촉자 입소자(종사자) 모니터링(임상증상기록지) .....	27
4. (서식3-1)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.....	28
5. (서식3-2)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.....	29
6. (서식4)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체크리스트 .....	30
7. (서식5)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점검표 .....	31

## ▷ 참 고 ◁

1. 사회복지시설 종류 .....	32
--------------------	----

# I 개요

## 1. 목적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에 대한 대응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고('20.11.1) 시행(11.7) 됨에 따라
  - 사회복지시설\*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 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
- \*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(참고1)
-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(이하 '관리자')의 역할 등을 제시함

### ◆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특성

- 증상
  - 발열, 권태감, 기침, 호흡곤란 및 폐렴,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
  - 그 외 인후통, 두통, 가래, 객혈과 오심, 설사도 나타남
- 전파 방법
  - (비말전파)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,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(침방울)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
  - (접촉전파)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,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, 코, 입 등을 만져서 감염
- 전파 특성
  -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, 전염력이 높고
  -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

## 2. 기본방향

- 각 지자체는 전국·권역별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단계가 조정될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범위를 신속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
  - 다수인이 이용(생활)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“코로나19 관리 체계”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  - 시설이용자,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,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
    - \* 「위생 · 청소/소독/환기 · 근무 환경 개선,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
  -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환자(의심환자 포함)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,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
- ①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,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원칙, ②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인 서비스 범위·대상 조정
  - \*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만 사회복지 시설 운영 중지(단, 취약계층 긴급돌봄 체계 유지)

##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조치사항

### 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
-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
  -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등\* 지정,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, 근무자 관리, 시설 환경관리,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도록 함
    - \* 감염전담 담당자(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,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)
  - 종사자 · 이용자 · 입소자 · 방문자(자원봉사자 포함) 등 명단 작성 · 보관
    - \*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(권고)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- 의심환자(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)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\*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
  - \*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-관내 보건소-소방서- 선별진료소- 의료기관

## 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

### □ 시설 이용자,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·홍보

-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, 행동요령,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
-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
- 코로나19 예방수칙,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
  - \*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([www.kdca.go.kr](http://www.kdca.go.kr))에 게시된 자료 활용

### □ 환경 위생 관리

-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(비수동식 수도꼭지 등), 손 세척제(액체비누, 알콜 70% 이상 손소독제 등)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
  -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
  -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
-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, 소독 및 환기 강화
  -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<sup>\*</sup>에 대한 소독 강화(일 2회 이상)
    - \* 문손잡이, 난간, 다양한 터치 장치, 책상, 탁자, 의자, 전화,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,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
  -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(일 2회 이상 자주)
    - \* 환기는 상시로 하되, 에어컨 가동 시,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(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‘에어컨’)
- 시설 내 마스크, 체온계,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
  - 종사자,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

### 3. 시설 입소·출입 시 관리 강화

-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(마스크 착용, 손 씻기) 후 출입 안내
- 시설 이용자·입소자·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, 호흡기 증상 확인 (서식 1)
  - ⇒ 시설 내 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,
    - (1)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, 방문자는 출입 금지
    - (2)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((1)+(2):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),
    - (3)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

-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
  -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
    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, 자택에서 3~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
  - ⇒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, 보건소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로 문의,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

#### ◆ (참고)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[유증상자]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,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~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, 보건소(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

-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 (재택근무, 온라인 근무)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
  -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,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(이용중단)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
    - \* (예시) 근로자 :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/ 어린이 등 : 결석 시 출석 인정

-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,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
-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, 노인, 임신부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
- 의심환자 발생 시,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
  - \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
#### 시설 입소자의 면회 · 외출 · 외박 관련

- \*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시설별 면회 수칙 마련할 것
- 면회는 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에 실시하되,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,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된 지역의 면회자 제한하는 등 조치
  - \* 단,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발령 시 대면 면회 금지하되, 입소자 정서적 안정을 위해 **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 권장**
- 외출·외박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가능하며 단계 격상으로 금지 원칙 적용 시 ①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(원),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, 해당 입소자는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 · 운영
  - \* 단,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 **외출·외박 전면금지**

#### 이용자 ·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

- 자원봉사자 ·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방문 허용시 위험요인 파악, 발열 확인,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 (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)
  - <서식3> 작성 후 출입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
-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,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충분한 손씻기)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

####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불요·불급한 출장 자제

## 4. 접촉의 최소화

-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

\*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,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,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

-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
- 종사자 간 식사, 모임,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

- 출·퇴근 시간, 식사시간 교차 실시 \* 유연근무제,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
- 실내·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공간의 4m<sup>2</sup>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
-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(띄워 앉기, 가림막 등 포함)

## 5. 시설 휴관(원) 시 조치

### 휴관(원) 시,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지속 제공

- \*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 마련,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
- \* 아동(도시락, 식사지원 등), 노인(안부전화, 도시락 등), 장애인(활동지원) 등
- 「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」(20. 2. 21. 既 배포) 및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
  - \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41(2020.02.21.) 既 시행

## 6.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

-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
  -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, 전용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사용하기
-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,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,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
  - \* 보건소 도착 전,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,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,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

-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시·도(보건소)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
- 입소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
- (의심)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,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
- (의심)환자와 접촉한 입소자 · 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(서식 2)
  -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
  -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
  - 단,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,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연락도록 조치
    - \*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,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,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

## 7. 행정사항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
  - (유급휴가 처리)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 · 격리기간 동안 '유급휴가' 처리(20.1.30. 시달)
  - (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)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'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'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(20.1.29. 공문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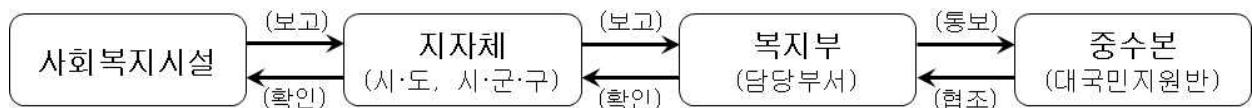
### III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세부 가이드라인

#### □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세부 가이드라인

##### ○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

- 복지부(중수본 및 사업부서)와 지자체, 사회복지시설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등 지정
  - \* 감염관리책임자 :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,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파악 등 수행
- 감염자 발생,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 및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시설은 지자체에 보고,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

<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>



##### ○ 방역조치 점검

\* 대응지침상 양식 활용

- (사회복지시설) 이용자·입소자(거주자)·종사자 감염병 모니터링(2주간) 및 방역 수칙 교육 결과\*를 소관 지자체(시·군·구)에 보고\*\*
  - \*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 교육 실시 결과 포함(지침 시행시 1회, 이후 신규 직원 대상)
  - \*\* 지자체 시정에 따라 보고의 형식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, 반드시 소관 시설 전체에 지침을 포함하여 공문 등 방법으로 안내할 것
- (지자체) 시설 운영 재개 또는 운영 범위·대상이 확대될 경우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점검한 후 운영 재개·확대

##### ○ 공통 적용 사항

-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시, 사전 조치 신속 시행(지자체·시설)
  -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·시행, ② 시설운영수칙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, ③ 방역관련 물품 확보,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·실시 등
-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·시설별 위험도를 고려\*하여 시설 운영 여부 및 서비스 범위·대상 등 결정
  - \* 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,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, 방역조치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(서비스) 특성에 맞게 세부사항 결정

-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·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방역 사각지대\*가 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 관리

< 참고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>

단계	생활방역	지역 유행 단계		전국 유행 단계	
	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
상황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 개시	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사회복지 시설	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*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·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				휴관·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

## ○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

### - 1단계(생활 속 거리두기) :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설 운영

- \*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제한(4㎡당 1명)하여 운영, 비대면 서비스 병행 및 시간제·사전예약제 권장
- \* 생활시설은 외출·외박 제한적 가능, 1일 인원 통제하여 면회 실시

### - 1.5단계(지역적 유행 개시) : 방역 강화 및 활동 제한

- \* 신체활동 제한,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

### - 2단계(전국적 확산 개시) : 이용 정원의 50% 이하(최대 100인) 운영

- \*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, 전 시설 시간제·사전예약제 원칙
- \* 생활 시설은 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 및 비대면 면회 실시

### - 2.5단계(전국적 유행 본격화) : 이용 정원의 30% 이하(최대 50인) 운영

- \*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,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, 감염 가능성, 방역조치,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
- \*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

### - 3단계(전국적 대유행) : 사회복지(이용)시설 운영 중지

- \* 사회복지(이용)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
- \*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

## <세부 가이드라인>

거리두기	구분	주요 내용
1단계 (운영유지)	방역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(미준수 시 이용 제한)</li> </ul>
	이용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해당 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·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</li> <li>▶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은 띄워 앉기,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서 좌석 간 1m 이상 이격이 가능하면 제공</li> <li>▶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설 이용 시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</li> </ul>
	생활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(방역 조치)</li> <li>▶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</li> </ul> <p>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·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</p>
1.5단계 (운영유지)	방역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유행권역) 위험시설·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,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</li> <li>▶ (타 지역)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자체적 자율 조치</li> </ul>
	이용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해당 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·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나,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</li> <li>▶ 식사 등 제공 시 탁자 간 1m 이상 이격</li> <li>▶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운영</li> </ul>
	생활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(방역 조치)하나,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</li> <li>▶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</li> </ul> <p>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·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</p>
2단계 (운영유지)	방역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유행권역)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%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(이용시설)</li> <li>▶ (타 지역) 1.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</li> </ul>
	이용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동 시간대 프로그램(서비스)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% 이하가 되도록 조정(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)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</li> <li>▶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,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</li> <li>▶ 전 시설 시간제·사전예약제 원칙</li> </ul>
	생활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           <p>※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·외박 가능</p> </li> <li>▶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</li> <li>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</li> </ul>

거리두기	구분	주요 내용
2.5단계 (운영유지)	방역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전국) 서비스 이용 인원을 30% 이하로 강력하게 제한(이용시설)</li> <li>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2단계 조치 유지 가능</li> </ul>
	이용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 시간대 프로그램(서비스) 대상을 이용 정원의 30% 이하가 되도록 조정(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50인을 넘을 수 없음)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</li> <li>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,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, 감염 가능성, 방역조치 현황, 방역에 용이한 건축물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 결정</li> </ul> <p>* 운영 중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</p>
	생활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, 외부 출입 인원 통제</li> <li>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·외박 가능</li> <li>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</li> <li>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</li> </ul>
3단계 (운영중지)	방역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</li> </ul>
	이용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복지(이용)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제공</li> </ul>
	생활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출·외박 전면금지, 외부 인원 출입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면회 금지</li> <li>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</li> </ul>

\*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아래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본 사항을 안내하기 바람

## □ 서비스 제공 유지 방안

### 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

-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시설 운영을 중지하더라도, 취약계층 긴급돌봄(사회 서비스원 등)\*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최대한 운영·유지

\* 아동(도시락, 식사 지원 등), 노인(안부 전화, 도시락 등), 장애인(활동지원) 등 유지, 보호자(노인·장애인) 부재 등 사유로 지속적 보호가 필요할 경우 긴급돌봄 지원

- 일자리시설\*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이 방역조치가 원활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 유지하여 취약계층 소득보전 도모(필요 시 격일제 등 유연근무)
  - \* 자활사업(기존 2단계 발령 시 250개 기관 중 약 230개 기관은 방역 조치 후 운영) 노인일자리(기존 2단계 발령 시 74만명 중 일자리 중 50~60만명은 방역 조치 하 활동)
- 아동·보육시설은 거리두기 조치로 시설이 휴원(가정 돌봄 권고)하더라도 긴급돌봄(보육) 서비스는 제공 유지
  - \* 일률적 휴원 권고 대신 지자체에서 지역 코로나19 현황 등 고려하여 제한적 운영 원칙, 종사자 복무 관리 계획 수립, 집단행사 교육 취소·연기, 외부인 출입·접촉 금지 원칙 준수
  - 영·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음식물 취식 허용 등 요건을 다소 완화할 경우 출입자, 물품·시설·공간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
-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지자체에서 발생 현황, 유동 인구,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하며, 이용 중지 조치 시 대체 서비스 제공\*
  - \* 홀로 계시는 어르신 및 기저질환 등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에 안부 확인 등 관리와 함께 도시락 배달 등 대체식 지원,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서비스 유지
- 장애인·노인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내 외부인 출입·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입소자·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
  - \* 비대면 면회 허용, SNS 등을 통한 동영상·사진 주기적 게시,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활동 허용 등

## IV 지자체 협조사항

- (현장지원)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, 수행기관 업무지원 확대 필요
- (감염관리책임자)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등을 지정토록 조치 필요

- (연락체계 구축) 시설 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
  - (격리시설 마련)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시설(1인실 원칙)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  - (발열체크 등 확인)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, 이용자, 입소자 및 방문자 등에 대한 체온 측정 및 기록하도록 조치 필요
- (시설 상시 모니터링)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
- 특히, 이용시설 운영재개 전 시설별 사전준비사항 점검 실시
- (시설휴관)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
## V

##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적용

-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의 성격
-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및 사정에 따라 별도 대응지침 마련 등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바람

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

## I. 감염예방

 개인 위생 교육·홍보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
 위생환경 개선(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) 청소, 소독 및 환기 강화

-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

\* 문 손잡이, 난간,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, 책상, 테이블, 의자, 전화, 컴퓨터 키보드, 엘리베이터 버튼 등

- 시설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

## II. 직원 및 방문객 관리 강화

 직원 및 시설종사자,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

: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

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코로나19 발생국가·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

## III. 사회적 거리두기

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직원좌석 간격(최소 1m)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출·퇴근 시간, 점심시간 교차실시,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실내 휴게실,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집단 행사, 소규모 모임,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

### 일반국민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### 고위험군(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\*)

\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### 유증상자(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)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 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###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



질병관리본부  
KCDC


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##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

### 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 
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기침할 때 옷소매로  
입과 코를 가리고!



### [올바른 기침예절]



발행일 2019.11.5.

# 꼭!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

## 국민 예방수칙



흐르는 물에 비누로  
꼼꼼하게 손씻기



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 
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


씻지 않은 손으로  
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


발열, 호흡기 증상자와의  
접촉 피하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  
마스크 착용하기



사람 많은 곳  
방문 자제하기

## 유증상자\* 예방수칙

\*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

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 
외출 자제하기



3~4일 경과를 관찰하며  
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



38°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 
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,  
관찰보건소 문의 및  
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  
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



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 
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



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 
외출,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 
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 
지시 철저히 따르기

발행일 : 2020.2.27.



##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“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”

**1**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,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

**2** 마스크로 입·코를 완전히 가려서,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

**3** 마스크 안에 수건,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

**4**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

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

**5**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,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

### 접이형 제품 착용법



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



고정점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



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



양 손가락으로 코핀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



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

### 컵형 제품 착용법



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



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



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



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



양 손가락으로 코핀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



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

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



##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



**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**



###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

-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
- 식사는 혼자서 하기
-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
(공용으로 사용 시, 사용 후 랙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)



###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



###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

- 불가피할 경우,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



###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 사용하기

-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-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



### 건강수칙 지키기

- 손씻기,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
-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
-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, 기침 후 손씻기·손소독 하기

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 
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자가모니터링 방법

-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
-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
-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, 감염 증상 알려주기

##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주요 증상

- 발열(37.5°C 이상)
-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- 폐렴



# 자가격리대상자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


##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

- 특히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! • 외부인 방문 제한



##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



##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



##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



##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(식기, 물컵, 수건, 침구 등) 구분하여 사용하기

-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-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



## 테이블 위, 문 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



##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

#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주요 증상

- ✓ 발열(37.5°C 이상)
- ✓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- ✓ 폐렴

## 불임 6

## 사회복지시설 소독 안내

### 【 일상 소독 방법 [예] 】

#### 1.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

가.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\*를 착용

\* 일회용 장갑, 보건용 마스크 필요하면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

나.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

#### ◆소독 부위 예시

- (1) 손잡이, 난간, 문고리, 팔걸이, 에어컨 콘센트,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
- (2)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(예 :키보드, 책상, 의자, 전화 등)
- (3) 화장실 : 수도꼭지, 화장실 문 손잡이,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

- (방법) 알코올,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

\*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

- (횟수)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

- 다만,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

\*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 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

#### 2.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

- 출퇴근이 빈번한 경우 청소·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(예: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)

\* 500 ppm = 물 1000ml + 차아염소산나트륨(5%) 10ml

\*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

#### 3. 시설 관리자는 청소·소독 담당자에게 청소,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(소독제,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)을 충분히 제공

## 【 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[예] 】

### ☒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

1.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(눈, 코, 입)을 만지지 않는다.

2. 소독제를 준비한다.

\*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소독안내(2-1판 참조)

3. 환자가 이용한 공간(구역)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,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.

3.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.

4.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.

5. 준비된 소독제로 천(타올)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\*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.

\* 손잡이, 팔걸이, 책상, 의자, 키보드, 마우스, 스위치, 블라인드, 창문, 벽 등

6. 시트, 덮개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.

7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가 사용했던 카펫,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.

\*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, 세탁이 어려운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(고온) 소독

8.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(타올)과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.

9.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→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→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. →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.

11. 일회용 가운,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.

12.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.

13.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.

14.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.

15.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,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 또는 지역번호+120)에 문의

(코로나19 대응지침 9-2판 참조)

**□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**

- **확진자** :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- **의사환자** :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- **조사 대상 유증상자**
  - ①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  -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  -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
## 불임 8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관련 정보

\*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

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SARS-CoV-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</li></ul>
질병분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법정감염병 :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</li><li>질병 코드 : U07.1</li></ul>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SARS-CoV-2 :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</li></ul>
전파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현재까지는 비말(침방울),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(침방울)을 통한 전파 등</li><li>-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, 코, 입을 만짐</li></ul></li></ul>
잠복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~14일 (평균 4~7일)</li></ul>
진단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환자 :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</li><li>진단을 위한 검사기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</li><li>-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</li></ul></li></ul>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발열, 권태감, 기침,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그 외 가래, 인후통, 두통, 객혈과 오심, 설사도 나타남</li></ul></li></ul>
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대증 치료 : 수액 보충,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</li><li>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</li></ul>
치명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치명률은 1~2%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</li><li>단, 고령,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,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, 사망 초래</li></ul>
관리	<p>&lt;환자 관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표준주의, 비밀주의, 접촉주의 준수</li><li>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</li></ul> <p>&lt;접촉자 관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</li></ul>
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백신 없음</li><li>올바른 손씻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</li><li>-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후, 기저귀 교체 전후, 코를 풀거나 기침, 재채기 후 등 실시</li></ul></li><li>기침 예절 준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</li><li>-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</li></ul></li><li>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</li></ul>

## 서식1-1

## 시설 입소자(종사자) 모니터링 - 임상증상 기록지

대상자명 예시 000	증상		1일차	2일차	3일차	4일차	5일차	6일차	7일차	~	14일차	15일차	16일차	17일차	~	종료일
	체온 ℃	오전 오후	36.5° C	36.5° C	36.5° C	36.5° C	36.5° C	36.5°C								
	체온 ℃	오전 오후	36.5° C	38°C	36.5° C	36.5° C	36.5° C	36.5°C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	① 기침		✓	✓	✓				✓				✓			
	② 인후통					✓	✓							✓	✓	✓
	③ 호흡곤란		✓	✓	✓											
	④ 객담		✓					✓					✓			
	⑤ 기타			설사												
	체온 ℃	오전 오후														
	호흡기증상															
	① 기침															
	② 인후통															
	③ 호흡곤란															
	④ 객담															
	⑤ 기타	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체온 ℃	오전 오후						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	① 기침															
	② 인후통															
	③ 호흡곤란															
	④ 객담															
	⑤ 기타	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
※ 접촉되지 않은 입소자 및 종사자이므로 유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해야함

## 서식1-2

## 시설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[예시]

## 서식2

### 접촉자 입소자(종사자) 모니터링 - 임상증상 기록지

대상지명	증상		1일차	2일차	3일차	4일차	5일차	6일차	7일차	8일차	9일차	10일차	11일차	12일차	13일차	14일차
예시 000	체온 ℃	오전	36.5° C	36.5° C	36.5° C	36.5° C	36.5° C	36.5°C								
	체온 ℃	오후	38°C	36.5° C	36.5° C	36.5° C	36.5° C	36.5°C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	① 기침		✓	✓	✓				✓			✓				
	② 인후통					✓	✓							✓	✓	✓
	③ 호흡곤란		✓	✓	✓											
	④ 객담		✓					✓					✓			
예시 001	체온 ℃	오전														
	체온 ℃	오후						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	① 기침															
	② 인후통															
	③ 호흡곤란															
	④ 객담															
예시 002	⑤ 기타		설사													
	체온 ℃	오전														
	체온 ℃	오후						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	① 기침															
	② 인후통															
	③ 호흡곤란															
예시 003	④ 객담															
	⑤ 기타	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체온 ℃	오전														
	체온 ℃	오후						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	① 기침															
	② 인후통															
예시 004	③ 호흡곤란															
	④ 객담															
	⑤ 기타	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체온 ℃	오전														
	체온 ℃	오후						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	① 기침															
예시 005	② 인후통															
	③ 호흡곤란															
	④ 객담															
	⑤ 기타	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체온 ℃	오전														
	체온 ℃	오후						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예시 006	① 기침															
	④ 객담															
	⑤ 기타	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체온 ℃	오전														
	체온 ℃	오후						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	② 인후통															

### 서식3-1

##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- 예시 [1]

1) 별별 카메라에서 알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, 직접 체온계로 측정(측정하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며 비접촉 체온계로 측정)

2)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

## 서식3-2

##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- 예시 [2]

1) 빨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

2)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

## 서식4

##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·관리 체크리스트

○ 확인일시: 20 년 월 일 (요일) 시

○ 확인자: 소속 \_\_\_\_\_ 이름 \_\_\_\_\_ (서명)

○ 시설명: ( )

체크리스트	해당란에 ○ 표시		비고
	예	아니오	
<b>협력체계(1)</b>			
1. 비상연락체계 (격리시설-관할보건소 - 관할 시·군·구 및 시·도)	1.1.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		
	1.2. 눈에 잘 띠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		
<b>준수사항(8)</b>			
2.1. 의심증상 확인,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	직위: 성명: 연락처:		
2.2. 자원봉사자·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			
2.3. 시설 입소자의 면회·외출·외박 금지, 가족에게 안내 (※ 생활시설만 해당)			
2.4.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(발열체크 등) 실시 및 기록			
2.5. 의심증상이 있는 ▲종사자는 업무배제(출근금지), ▲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, ▲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			
2.6.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,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,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충분한 손씻기) 실시 후 활동 시작			
2.7.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, 소독,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			
2.8. 사회적(생활 속)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, 집단행사·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			
2.9.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? (이용시설 : 대기공간 / 생활시설 : 격리실)			
<b>기타 특이사항</b>			
(자유기술)			

## 서식5

##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\* 모니터링 점검표

사회복지시설 명 : \_\_\_\_\_

감사 항목	내용 확인	적합성	부적합	증거 정보
1.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	요양보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환자를 돌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합니다.			
	요양보호사는 올바른 손 위생을 따르고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포함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위생을 수행하며 점검 체계가 있습니다.			
	자가 격리된 요양보호사는 관리 기간 동안 입소자 를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지 않습니다.			
	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출석 시간 과 장소를 통제하고 입소자의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합니다.			
	사회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 명단 확보 및 보관 해야 합니다.			
2.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	사회복지시설 출입 시간이 있으며, 출입 기간 동안에는 입소자를 봉사서비스를 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된 자원봉사자만 출입합니다.			
	사회복지시설 방문 시간 (예 : 아침, 정오 및 저녁) 을 설정합니다. 각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.			
	자원봉사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.			
	모든 자원봉사자의 이름, 연락처 및 주소, 방문시간 을 포함한 기록 하여 주십시오.			
	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기전에 마스크 를 착용하고 손 위생, 및 기침 예절을 시행해야합니다.			
3. 요양보호사의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	전담 직원은 요양보호사를 위해 매일 온도를 측정 하고 검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감염과 같은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적 인 추적 및 조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.			
	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출근 하지 않습니다.			
4. 요양보호사 감염 관리 교육	손 위생, 기침예절, 개인 보호구 사용, 환경 및 소독 및 기타 관리 조치를 포함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훈련을 합니다.			

\* 입소자와 접촉하는 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 모두 포함

검사관 서명 : \_\_\_\_\_ 검사 날짜 :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

## 참고1

## 사회복지시설 종류

속적 후처	시설종류	세부종류		관련법
		생활시설	이용시설	
보건 복지부	노인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노인주거복지시설</li> <li>◦ 노인의료복지시설</li> <li>◦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재가노인복지시설</li> <li>◦ 노인여가복지시설</li> <li>◦ 노인보호전문기관</li> <li>◦ 노인일자리지원기관</li> </ul>	「노인복지법」
	복합노인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가능</li> </ul>		
	아동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아동양육시설</li> <li>◦ 아동일시보호시설</li> <li>◦ 아동보호치료시설</li> <li>◦ 자립지원시설</li> <li>◦ 공동생활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아동상담소</li> <li>◦ 아동천용시설</li> <li>◦ 지역아동센터</li> <li>◦ 아동보호전문기관</li> <li>◦ 가정위탁지원센터</li> </ul>	「아동복지법」
	장애인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애유형별 거주시설</li> <li>◦ 중증장애인 거주시설</li> <li>◦ 장애영유아 거주시설</li> <li>◦ 장애인다기 거주시설</li> <li>◦ 장애인동생생활가정</li> <li>◦ 피해장애인쉼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</li> <li>◦ 장애인직업재활시설</li> <li>◦ 장애인의료재활시설</li> <li>◦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</li> </ul>	
	어린이집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어린이집</li> </ul>	「영유아보육법」
	정신보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신요약시설</li> <li>◦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</li> </ul>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	노숙인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노숙인자활시설</li> <li>◦ 노숙인재활시설</li> <li>◦ 노숙인요양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노숙인종합지원센터</li> <li>◦ 노숙인일시보호시설</li> <li>◦ 노숙인급식시설</li> <li>◦ 노숙인치료시설</li> <li>◦ 쪽방상담소</li> </ul>	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	사회복지관 결핵·한센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결핵·한센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회복지관</li> </ul>	「사회복지사업법」
	지역자활센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역자활센터</li> </ul>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	다함께돌봄센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다함께돌봄센터</li> </ul>	「아동복지법」
여성 가족부	성매매피해지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반지원시설</li> <li>◦ 청소년지원시설</li> <li>◦ 외국인지원시설</li> <li>◦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활지원센터</li> <li>◦ 성매매피해상담소</li> </ul>	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성폭력피해보호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성폭력피해상담소</li> </ul>	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가정폭력보호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가정폭력상담소</li> <li>◦ 긴급전화센터</li> </ul>	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한부모가족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</li> <li>◦ 부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</li> <li>◦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)</li> <li>◦ 일시지원복지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</li> </ul>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	다문화가족지원센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다문화가족지원센터</li> </ul>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	건강가정지원센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건강가정지원센터</li> </ul>	「건강가정기본법」
	청소년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청소년쉼터</li> <li>◦ 청소년자립지원관</li> <li>◦ 청소년치료재활센터</li> <li>◦ 청소년회복지원시설</li> </ul>	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